

민사조정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광주 및 전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

The Legal Sociological Study on the Reality of
Civil Mediation and it's Activating Policy

- in Jurisdiction of Gwangju & Chonnam District Court -

오 대 성**

Dae-Sung Oh

〈 목 차 〉

- I. 서 론
- II. 민사조정 의의와 절차
- III. 민사조정 운영실태
- IV. 민사조정 운영상의 문제점
- V. 민사조정 조정성공률의 제고방안
- VI. 결 론

주제어 : 민사조정, 민사조정 실태, 민사조정 활성화, 민사조정 성공률, 민사조정 처리율, 조정위원회, 법사회학적 연구, 재판상 화해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4-B00266).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민사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간단·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널리 권장되고 있다. 특히 민사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대상이 모든 민사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민사조정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이 특수한 사건¹⁾이나 소액의 사건에 한해서만 극히 소극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1990년에 민사조정에 관한 통일된 법전인 ‘민사조정법’(이하 ‘민조’라 함)이 제정되어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사조정법이 시행된 지 10여년 동안 여전히 민사조정은 잘 활용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그러자 2001년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집중심리와 구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의 신모델’을 만들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법원은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항상 화해나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모델은 2002년 개정민사소송법에 그대로 채택되고, 조정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화되어 그 활용은 점차 확대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조정으로 해결된 민사사건은 1991년에는 전국적으로 겨우 16,330건²⁾으로 4.6%의 조정처리율³⁾을 보이던 것이, 2001년에는 69,100건으로 늘어 14.4% 조정처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2002년에는 그 비율이 15.2%, 2003년에는 17.7%, 2004년에는 21.5%, 2005년에는 19.6%, 2006년에는 26.4%로 조정처리비율은 매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제 민사조정은 판결과 함께 국민들의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로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급 법원에 따라 조정처리율은 상당한 격차가 있고 동일법원내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조정처리율과 조정성공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다르고 조정위원의 자세와 노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사조정제도의 활용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아직도 상당수의 변호사가 민사조정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⁴⁾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이야 말로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패소한 자는 서운해 하고 억울해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

1) 借地借家調停法上 임대차관련문제

2) 이 수치는 제1심과 항소심 사건을 합한 숫자임.

3) 조정처리율이란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종료된 비율을 말한다.

4) 민경환(변호사), 민사조정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법률신문, 2005년 12월 19일자

의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 불만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송사건 중에는 법적인 쟁점이 전혀 없는 데도 당사자들이 조정이나 화해를 거부하고 판결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당사자는 조정위원의 조정안에 불만을 품으면서 패소하면 상소할 테니 그냥 판결해 달라는 막무가내파도 있다. 대개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끼리 감정의 골은 깊을 데로 깊어 화해나 조정의 권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수록 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고, 조정위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정성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조정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조정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성공률의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국의 조정사건처리 현황과 광주지방법원관내⁵⁾의 민사조정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정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조정성공률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는 민사조정의 조정성공률을 높여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사법연감(1992년~2006)의 통계와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광주고등법원의 조정노력과 필자의 조정위원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민사조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I. 민사조정의 의의와 절차

민사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사건을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실제로는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아니한다.⁶⁾ 만약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은 계속 판결절차로 진행된다.⁷⁾ 이는 현행 민사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소법원(재판부)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5) 본고의 조사범위를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필자가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이어서 자료수집에 용이하고 이 지역의 조정처리율과 조정성공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6) 下町和雄, 『民事調停の問題點』, 『新裁判實務大系』 26卷, 青林書院, 2005, p. 482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5, p.22

민사조정과 소송상 화해는 거의 같다. 이 양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같다.⁸⁾ 양당사자가 법원앞에서 합의하면 조정이나 화해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⁹⁾ 사실 수소법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때, 이것이 화해인지 조정인지 분간할 수 없다. 법원이 화해를 권유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봐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민사조정의 실태조사(제Ⅲ장)에서 조정사건의 처리건수와 그 성공률을 계산할 때, 화해사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조정은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반드시 수소법원의 면전에서만 해야 한다¹⁰⁾.

그러나 중재는 조정과 약간 다르다. 중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조정과 같지만¹¹⁾,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하면 당사자는 이에 반드시 구속된다는 점에서 판결과 비슷하다¹²⁾. 그러나 중재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이를 자주적 분쟁해결제(ADR)라고 한다¹³⁾.

민사조정절차는 크게 당사자가 별도의 '조정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와 수소법원(재판부)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든지 係屬中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담당판사로 하여금 처리하거나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개 수소법원에 직속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수명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되고 수명법관이 조정장이 된다. 실무상 이러한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이 전체 조정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당해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민조26조).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이 종결된다.¹⁵⁾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 때

8) 권혁재, ADR,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개관 : 세소전 화해, 민사조정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중심으로, 법무사 저널 통권142호, 서울지방법무사회, 2004. 02, p. 13

9) 김홍규, 「민사소송법」, 박영사, 삼영사, 2005, p.559

10) 정동윤/유병현 공저,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p.638

11) Kimberlee K. Kovach, 「Mediation」, Thomson West 2005, p. 7 ; Richard L. Marcus & Wdward F. Sherman, 「Complex Litigation」, 2nd ed., West Publishing Co. 2000, p. 1026

12) 이시운, 전제서, p.22

13)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 1호 한국중재학회 2007.3, p.39

14) 법원행정처, 「조정위원직무편람」, 2006. 4. 26, p.11

15) 법원행정처, 상계서, p. 11

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여야 한다.¹⁶⁾ (민조30조)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소송으로 移行된다. 그러나 조정기관의 조정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민조16조, 20조).

Ⅲ. 민사조정 운영실태

1. 서언

본절에서는 민사조정사건에 대한 연도별 추이현황과 조정성공률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1992년~2006년)의 통계자료를 참조로 광주지방법원(지원 및 광주고법 포함) 및 전국의 조정처리율과 조정성공률을 산출하기로 한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의 현황과 그 활동에 대해서도 살핀다. 아울러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성공률의 제고 노력과 필자의 조정성공사례를 덧붙인다.

이는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성공률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조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민사조정·화해의 본안사건에 대한 연도별 처리비율

민사상의 분쟁이 조정이나 화해로 처리되는 건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¹⁷⁾ 여기에는 단독사건과 합의사건만을 말하고 소액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소액사건은 판결보다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 조정이나 화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認諾의 경우는 조정·화해에 포함시켰는데, 인

16) 그러나 수소법원이 조정회부에 불인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강제조정)은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즉 예컨대, 일방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타방당사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제3자(배우자나 회사의 상사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경우 강제조정을 실시한다.

17) 이 도표는 사법연감 1992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통계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사법연감은 발행연도의 전년 통계를 수록함. 따라서 「2006년 사법연감」은 2005년도의 통계이며 「2007년 사법연감」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음.

락은 주로 조정·화해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화해사건의 연도별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 <표1>과 <표2>와 같이 조정처리건수는 해마다 증가¹⁸⁾하고 있으며, 특히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보다 항상 조정처리율¹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1년은 민사조정법²⁰⁾이 처음 시행되던 이듬해인데,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제1심법원에서 15,644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 5.0%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686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 4.2%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²¹⁾ 그후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신모델이 시행되면서 조정사건은 크게 늘어났다.

2001년도의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1심법원이 26,913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3.3%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5,403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 15.4%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정성립은 33,014건이 처리되어 전체 조정성공률²²⁾은 81%에 달했다.

2002년에는 1심법원의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28,055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3.6%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5,564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6.8%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조정성립은 전체적으로 34,674건이 처리되어 조정성공률은 84%이다.

2003년에는 1심법원의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33,131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3.6%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7,598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22.8%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의 2003년 조정처리는 55%로서 대구고법(69%)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최고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조정성립은 전체적으로 35,820건이 처리되어 조정성공률은 86%이다.

2004년에는 1심법원의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38,068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5%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10,053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28%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조정성립은 전체적으로 42,831건이 처리되어 조정성공률은 87%이다.

2005년에는 1심법원의 조정·화해로 처리된 사건은 38,590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15.2%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8,609건으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23.9%의 조정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조정성립은 전체적으로 42,386건이 처리되어 조정성공률은

18) 실제는 총 조정·화해사건은 해마다 약간씩 감소추세인 데(표5참조), 이 통계표는 소액사건의 조정·화해처리건수가 빠져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조정처리율이란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종료된 비율을 말한다.

20) 민사조정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중전의 借地借家調停法, 소액사건심판법 및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처리특례법상의 조정규정 등이 폐지되고 조정에 관한 독립된 통일법전이다.

21) 1991년의 조정·화해 사건은 거의 화해사건이고 조정사건은 극히 미미하다.

22) 조정성공률이란 (조정성립건수+강제조정건수-강제조정 이의신청 및 취소건수)+본안처리건수 ×100을 말한다

87%이다.

그리고 2006년의 조정처리율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됐지만 1심법원이 27.9%, 항소심법원은 24.8%이다.²³⁾

따라서 조정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05년의 조정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2배로 폭증했다. 아울러 조정처리율도 해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표 1〉 제1심법원의 민사조정·화해사건의 연도별 현황²⁴⁾ (단위: 건수)

	1991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민사본안사건수	310,940	202,162	206,938	242,600	253,376	53,654
조정사건수 (화해,인락포함)	15,644	26,913	28,055	33,131	38,068	8,590
조정(화해) 처리율(%)	5.0	13.3	13.6	13.6	15.00	15.2

※소액사건은 여기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2〉 항소심법원의 민사조정·화해사건의 연도별 현황²⁵⁾ (단위: 건수)

	1991년	2001년	2002년	2003	2004년	2005년
민사본안사건수	18,680	35,011	33,162	33,273	35,910	36,064
조정사건수 (화해,인락포함)	686	5,403	5,564	7,598	10,053	8,609
조정(화해) 처리율(%)	4.2	15.4	16.8	22.8	28.0	23.9

※소액사건은 여기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민사조정성공률의 연도별 현황

민사조정사건의 총 처리건수는 2001년에 69,100건으로 그 조정성공률²⁶⁾은 81%이다. 총

23) 2006년도의 통계는 아직 「사법연감 2007」이 발간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수한 비공식 통계이다.

24) 이 도표는, 1992년도 사법연감 448면의 (표14)와 (표15), 2002년도 사법연감 439면의 (표15)와 (표21), 2003년도사법연감 445면의 (표15)와 (표21), 2004년도 사법연감 475면의 (표15)와 (표21), 2005년도 사법연감 525면의 (표15)와 (표21), 2006년도 사법연감 535면의 (표15)와 (표21) 의 조정·화해의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25) 이 도표는, 1992년도 사법연감 448면의 (표14)와 (표15), 2002년도 사법연감 439면의 (표15)와 (표21), 2003년도 사법연감 445면의 (표15)와 (표21), 2004년도 사법연감 475면의 (표15)와 (표21), 2005년도 사법연감 525면의 (표15)와 (표21), 2006년도 사법연감 535면의 (표15)와 (표21) 의 조정·화해의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조정처리건수는 해마다 약간씩 감소했는데, 이는 신청에 의한 조정건수가 해마다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의 조정(화해)사건은 총 64,378건으로 조정성공률은 84%이다. 2003년의 조정(화해)사건은 총 61,701건으로 조정성공률은 86%이다. 2004년의 조정(화해)사건은 총 66,091건으로 조정성공률은 87%이다. 2005년의 조정(화해)사건은 총 63,856건으로 조정성공률은 87%에 이르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이들 조정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과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아래 <표4>와 <표5> 참조) 즉,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건수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많았다. 그 조정성공률도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약50%선에 불과한데(<표4>참조),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은 약90%선이다(<표5>참조).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조정사건의 성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8%, 2002년 89%, 2003년 92%, 2004년 93%, 2005년 94%로 5년간 평균 조정성공률은 9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 조정사건은 주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인데,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총 조정현황(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처리)²⁷⁾

(단위: 건수)

	조정처리 건수	조정성립 건수	강제조정 건수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타	조정 성공률(%)
2001년	69,100	33,014	29,754	7,131	81
2002년	64,378	34,674	26,103	6,384	84
2003년	61,701	35,820	21,837	4,630	86
2004년	66,091	42,831	19,169	4,282	87
2005년	63,856	42,386	17,467	4,081	87
합 계	325,126	188,725	114,330	26,508	85

26) 조정성공률이란 (조정성립건수+강제조정건수-강제조정 의의신청 및 취소건수)÷본안처리건수×100을 말한다.

27) 이 표는, 2002년도 사법연감 439면의 (표21)와 (표22), 2003년도사법연감 445면의 (표21)와 (표22), 2004년도 사법연감 475면의 (표21)와 (표22), 2005년도 사법연감 525면의 (표21)와 (표22), 2006년도 사법연감 535면의 (표21)와 (표22) 의 조정·화해의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4〉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²⁸⁾

(단위 : 건수)

	조정처리 건수	조정성립 건수	조정불성립 건수	강제조정 건수	강제조정이 의신청	기타	조정 성공률(%)
2001년	18,303	6,717	3,348	5,254	849	1918	61
2002년	10,344	3,886	2,231	2,857	496	522	60
2003년	9,884	3,450	2,390	2,390	559	616	53
2004년	8,833	2,939	2,302	1,803	560	738	47
2005년	8,205	2,637	2,196	1,565	497	675	45
합 계	55,569	19,629	12,467	13,869	2,961	4470	55

※위의 조정사건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민사조정현황²⁹⁾

(단위 : 건수)

	조정처리 건수	조정성립 건수	강제조정 건수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타	조정 성공률(%)
2001년	50,797	26,297	24,500	6,282	88
2002년	54,034	30,788	23,246	5,888	89
2003년	51,817	32,370	19,447	4,071	92
2004년	57,258	39,892	17,366	3,722	93
2005년	55,651	39,749	15,902	3,584	94
합 계	269,557	169,096	100,461	23,547	91

4. 광주·전남지역의 법원별 민사조정현황

(1) 2004년도 민사조정현황

2004년도 광주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제1심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6>, <표7>, <표8>과 같다. 도표를 보면 광주지방법원이 1,357건, 목포지원이 461건 장흥지원이 15건 순천지원이 574건이고, 광주고등법원(항소심)은 235건으로

28) 이 표는, 2002년도 사법연감 439면의 (표21)와 (표22), 2003년도사법연감 445면의 (표21)와 (표22), 2004년도 사법연감 475면의 (표21)와 (표22), 2005년도 사법연감 525면의 (표21)와 (표22), 2006년도 사법연감 535면의 (표21)와 (표22) 의 조정·화해의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29) 이 표는, 2002년도 사법연감 439면의 (표21)와 (표22), 2003년도사법연감 445면의 (표21)와 (표22), 2004년도 사법연감 475면의 (표21)와 (표22), 2005년도 사법연감 525면의 (표21)와 (표22), 2006년도 사법연감 535면의 (표21)와 (표22) 의 조정·화해의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전반적으로 모든 법원에 걸쳐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 조정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30건, 목포지원이 1건, 장흥지원이 6건, 순천지원이 43건으로 극히 미미한 숫자이다. 순천지원을 제외하면 조정위원회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조정성공률은, 수소법원이 직접처리한 조정은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데,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 사건은 30%대에서 60%대에 이르고 있다. 어느 것이나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면 조정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이 더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성공률이 낮을 수 있다.

〈표 6〉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현황(2004년)³⁰⁾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지방법원	285	71	67	76	7	13	49
목포지원	27	9	7	6	2	1	48
장흥지원	3	2	1	.	.	.	67
순천지원	77	19	18	21	.	12	52
해남지원	5	1	2	2	1	.	40
전국법원합계	5,709	1,538	1,466	1,113	230	541	42

〈표 7〉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2004년)³¹⁾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지방법원(1심)	30	8	126	6	5	6	30	
목포지원(1심)	1	.	1	
장흥지원(1심)	6	2	3	1	.	1	50	
순천지원(1심)	43	21	10	12	4	6	67	
해남지원(1심)	
전국법원 합 계	제1심	2930	1302	793	646	334	598	55
	항소심	194	99	43	44	39	36	94

30) 이 표는 2005년도 사법연감 741면~744면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31) 이 표는 2005년도 사법연감 741면~744면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8> 수소법원의 직접조정현황(2004년)³²⁾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고등법원(항소심)		235	84	151	75	.	68
광주지방법원(1심)		1,357	981	376	9	5	99
목포지원(1심)		461	267	194	10	1	98
장흥지원(1심)		15	7	8	.	.	99
순천지원(1심)		574	448	126	.	.	99
해남지원(1심)		32	25	7	9	.	72
전국법원 합 계	제1심	49,650	35,353	14,297	2,983	.	94
	항소심	7,608	4,539	3,069	1,028	.	86

(2) 2005년도 민사조정현황

2005년도 광주지방법원관내의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9>, <10>, <11>과 같다. 위의 각급 법원의 조정처리건수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대폭 높아져 대부분 전국평균과 거의 같다. 특히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한 조정사건의 조정성공률은 대부분의 법원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 즉, 광주지방법원이 92%, 목포지원이 97%, 장흥지원이 97%, 순천지원이 99%, 해남지원이 97%이며, 전국평균은 93%이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항소심)은 83%로서 전국 항소법원의 평균과 거의 같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표 9>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현황(2005년)³³⁾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지방법원		190	60	41	50	4	13	56
목포지원		33	14	8	3	1	3	48
장흥지원		2	1	1	.	.	.	50
순천지원		69	16	24	19	2	4	48
해남지원		7	5	.	1	1	.	71
전국법원 합계		5,518	1,477	1,444	976	192	489	41

32) 이 표는 2005년도 사법연감 741면~744면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33) 이 표는 2006년도 사법연감 751면~753면 의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10>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현황(2004년)³⁴⁾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지방법원(1심)		6	.	5	1	.	1	17
목포지원(1심)		8	1	7	.	.	.	12
장흥지원(1심)		59	21	30	8	.	.	36
순천지원(1심)		40	15	16	8	4	9	48
해남지원(1심)	
전국법원 합 계	제1심	2602	1132	719	572	257	563	56
	항소심	85	28	33	17	13	12	38

<표 11> 수소법원의 직접조정현황(2005년)³⁵⁾

(단위 : 건수)

		조정 처리	조정 성립	강제 조정	강제조정 이의	기타	조정 성공률(%)
광주고등법원(항소심)		184	90	94	32		83
광주지방법원(1심)		1124	719	405	86	3	92
목포지원(1심)		365	251	114	12	1	97
장흥지원(1심)		35	26	9	1		97
순천지원(1심)		457	321	136	.		99
해남지원(1심)		33	30	3	1		97
전국법원 합 계	제1심	49,706	36,165	13,541	3,276	603	93
	항소심	5,945	3,584	2,361	949	12	84

(3) 2006년도 민사조정현황

2006년도 조정현황에 대한 전국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광주지방법원이 집계한 비공식 통계인 <표12>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조정처리율은 약 40%로 전국 평균치(30%)보다 훨씬 웃도는 편이다. 이는 광주지방법원장이 바뀌어 새법원장의 조정활성화의 발로라고 보겠다. 한편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의 조정처리율은 27%로서 전국평균치와 비슷하다.

34) 이 표는 2006년도 사법연감 751면~753면 의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35) 이 표는 2006년도 사법연감 751면~755면 의 민사조정사건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12〉 2006년도 민사조정·화해 처리현황

	제1심법원		항소심법원		
	광주지방법원	전국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전국
조정·화해처리율(%)	39.9	27.9	27.4	27.1	25.2

※ 이 표는 광주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비공식 통계임

5.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의 현황

(1) 민사조정위원의 법원별·직업별·연령별 현황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의 수는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8명인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522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크기에 비하면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다고 보겠다.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의 직업별분포를 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즉, 교수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가 35명, 기업체임원이 25명, 공무원이 8명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난(7명)에는 종교인, 화가, 시민단체임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명, 40대가 49명, 50대가 53명, 60대 이상이 34명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13〉 민사조정위원의 전국 법원별 현황³⁶⁾

(단위 : 명)

	민사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서울고등법원	84	인천지방법원	80
대전고등법원	44	수원지방법원	100
대구고등법원	39	춘천지방법원	68
부산고등법원	54	대전지방법원	104
광주고등법원	70	청주지방법원	86
서울중앙지방법원	522	대구지방법원	103
서울남부지방법원	90	울산지방법원	88
서울북부지방법원	88	제주지방법원	69
서울서부지방법원	46	광주지방법원	138

36) 이 표는 2006년도 사법연감 153면의 조정위원현황표(별표2-17)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14〉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의 직업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교수	3	15	16	2	36
기업가		8	9	8	25
공무원		3	3	2	8
언론인		1	1	1	3
의사		10	16	9	35
변호사		1		1	2
건축사			1	1	2
공인 회계사		1	1		2
법무사		1		4	5
세무사			1	3	4
공인 노무사		3			3
손해 사정인		3			3
감정 평가사		1	2		3
기타		2	2	3	7
합계	3	49	52	34	138

※이 표는 「2007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명부」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 전담조정위원의 구성

광주지방법원의 138명의 조정위원들은 전문가별³⁷⁾로 14개조로 나뉘어 각자 특정한 재판부에 전속으로 소속해 있다. 따라서 조정위원은 자기가 소속한 재판부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정사건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다른 재판부소속의 조정위원을 선정하기도 한다.

(3) 조정위원회회의 조정절차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적절한 조정위원을 임의로 선정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조정위원에게 약 2주전에 송부한다. 조정위원들은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조정기일에 참여하고, 대개 1회 기일마다 두개의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기일은 주로 금요일에 열리지만 조정위원의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열린다. 조정실에는 조정장(판사)과 조정위원이

37) 조정위원은 전문가별로 건설, 근로 의료 등 1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는 9~10명이다.

참여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조정위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정시간은 한 사건당 1시간 정도이고 조정수당은 한사건당 8만원 정도이다.

6. 광주고등법원의 민사조정성공률의 제고노력³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조정·화해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연구회³⁹⁾를 두어 조정제도를 연구하고 특정 민사재판부⁴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재판을 운영하였다.

(1) 조기 1회기일 지정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부분 1심을 거치면서 당사자들의 공방에 의하여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 있어 쟁점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항소장부분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면 즉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왜냐하면 또다시 서면공방절차를 거치면 1심에서 제출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2) 변론 겸 쟁점정리기일방식으로 운영

모든 기일은 반드시 본인출석을 유도하였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미리 전화로 연락하여 쟁점정리를 충분히 파악한 뒤 기일에 출석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일은 심문실에서 실시하고 사건당 1~2시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당사자가 하고 싶은 주장들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였다’는 만족감을 갖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부가 화해·조정을 권유할 때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조정(화해)참가인으로 소환하여 조정(화해)의 비율을 높였다. 그리고 쟁점을 중심으로 각자가 제출한 증거 및 미제출한 증거들을 開示하면서 당사자 스스로 재판에서의 승패를 가늠케 한 뒤, 이를 기초로 화해 및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높은 비율의 조정·화해가 성립되었다.⁴¹⁾

(3)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용

의료, 노동, 종교, 보험, 학계 등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였다. 전문가 조정위원은 정기적으로 월1회 운영하였는데, 그들은 전문

38) 이 부분은 광주지방법원의 인터넷에 게시된 부분을 인용하였다.

39) 조정연구회는 김관재수석부장판사(2007년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임)가 구성하였으며, 실제 그는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처리율을 전국 최고수준(55%)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0) 이는 광주고등법원 민사 4부를 말함

41) 민사4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내역 (2003. 03. 01 ~ 2003. 10. 31)

총 처리사건	판 결	화해/조정	기타
264건	52건(19.6%)	171건(64.7%)	41건(15.5%)

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사법참여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봄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패소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승복률을 제고할 수 있다.⁴²⁾

그 밖에 각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의 조정 참여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재판운영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법률적인 관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충실한 심리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화해권고결정제도의 활용

모든 사건은 양 당사자에게 만족스럽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쟁점에 관한 주장, 입증을 명하여 쟁점정리를 시행함과 동시에 화해·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면밀한 기록분석 및 중간합의를 마친후 승소할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의 양보한계선을 묻고, 반대당사자에게 패소가능성이 있음과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위 양보선을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을 고지하면서, 양 당사자로 하여금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소지하여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난 후 이의가 없으면 그에 따르고 이의가 있으면 14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의 70~80%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복잡한 사건의 금요일 기일지정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이 다투는 사건은 주로 금요일에 기일을 운영하였는데, 아래 도표와 같이 금요일에 조정·화해율이 주초에 비해 다소 더 높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래 도표에서 금요일 진행사건수가 적은 것은 금년(2003년)에 금요일에 공휴일이 많이 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요일은 주로 쌍방불출석이 예상되는 사건을 위주로 기일을 결정하였다.

〈표 15〉 광주고등법원 민사4부의 조정·화해현황(2003.3.1~2003.10.31)

	월	화	금	토	합계
조정·화해건수	43건(23.8%)	56건(21.4%)	65(26.8%)	7(10.2%)	171건
기일진행건수	180건	261건	242건*	68건**	751건

42) 전문가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65건인데, 그 중 22건이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여 33.8%의 조정·화해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 재판부의 평균 조정·화해율에는 약간 못 미치나, 전문가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대개 조정·화해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건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이 비율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7. 조정성공사례

필자는 광주고등법원의 전문가조정위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의 전문가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⁴³⁾ 이하에서는 필자가 경험한 조정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그 방법을 제시한다.

(1) 의료과오사건(항소심판결 : 2004나5715, 1심 : 2001가합7904사건)

<사안>

원고는 여의사인데 사고 당시 산모였고, 피고도 역시 여의사이다. 원고는 출산을 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던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산모)가 자연분만이 어려워지자 피고(산부인과 의사)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싸이토릭 1/2정을 삽입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해 자연분만을 하였다. 출생당시 신생아는 체온, 맥박, 호흡 등 모든 게 정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후 보름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보름후에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증이었고, 중간사인으로 두개강내 혈종과 뇌경색이었으며, 직접원인으로는 호흡부전이였다.

이에 원고는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도분만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분만전에 원고(산모)를 돌보지 않고 외출하여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다. 또 신참 간호사가 태아의 심音を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는 양막이 파열되었고, 그 결과 분만이 어려워지자 유도분만을 위해 약물을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유도분만제는 원고가 미리 가지고 온 것이고 사용량도 적정량을 사용하였으며,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를 직접 지켜볼 필요는 없고 간호사로 하여금 돌보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생아는 태어날 때에는 완전히 정상이었으며, 그가 한달후에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산모)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1심법원에서 기각당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1) 수소법원과 조정기일 : 광주고등법원, 2004년 8월 27일

2) 조정준비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대개 피고는 의사이고 원고는 환자이다. 원고의 辯을 들어보면 대개 자기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인데 강자인 의사에게 당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 사

43) 필자(전문가조정위원)의 조정성공율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약40%, 광주지방법원에서 약50%이다. 대개 전문가 조정위원회가 맡은 사건은 다른 조정사건보다 조정이 어려운 사건들이다.

건은 의료과오소송인데도 양당사자가 의사이다. 우연히도 원고와 피고는 똑같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당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두 사람은 대학선후배지간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낸 사이이다.

이 사건을 조정하기에 앞서 재판부와 조정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눴다.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니 1심판결의 내용과는 약간 달랐다. 당시 대법원의 방침이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의사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의 의견대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이 사건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요즈음 최소한 위자료가 3,000만은 넘는다. 그러나 조정위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왜냐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피고가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대략 1,000만원선에서 조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3) 조정진행

평소 때는 조정장(법관)과 조정위원 3명이 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조정장은 자리를 비우고 조정위원 2사람만이 조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 후 피고를 대기실로 보내고 원고에 대해서만 물었다. 즉, 이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 두사람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서로 친구지간인데 그전에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등 비법률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사람(원고의 아이)이 죽었는데 어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을 수가 있습니까?』라며 감정이 폭발쳐 울먹였다. 즉, 피고가 아무런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원고를 내보내고 피고를 불러 들었다. 역시 피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기 애가 죽었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먼저 상의했다라면, 내가 자기 선배이니 최소한의 예는 지켰을 텐데...』라고 하면서 원고의 訴제기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국 피고는 법적 책임은否認하지만 사람이 죽었으니 도의적 책임은 질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래서 다시 원고만 불러,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너무 적다면서 최소한 1,0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젠 원고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를 다시 불러 『아무튼 사람이 죽었으니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상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묻자, 피고는 『원고가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잘못(의료과오)을 시인하는 게 아닌지요?』라면서 먼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訴를 취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기

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감정료가 쟁점이 된 사례(2006가단 88338사건)

<사안>

원고는 광주시 중흥동 소재 X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급수배관공사를 의뢰 받고 공사를 했던 설비회사이다. 피고는 2006년 6월 원고의 아파트 옥상 물탱크의 송수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송수관을 건드려 송수관이 파열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사는 아파트의 위아래 주민 17가구 정도가 수도파이프가 터져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피고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하여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주었으나 원고만 당시 부재중이어서 배상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가 이러한 사고를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너무 많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청구원인사실과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었으나, 단지 손해배상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은 입주당시 내부를 리모델링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장기간 물이 새는 바람에 곰팡이가 생겨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비용과 그 공사로 인한 대체숙박비 및 위자료를 합쳐 21,456,85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고 당시 다른 피해주민들에게는 즉시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으며 그들(17가구)의 피해합계는 겨우 450만원뿐인데, 원고가 2,100여만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또 피고는 자신이 설비회사이므로 직접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요구한 보수비와 피고가 제시한 금액이 크게 달라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감정결과 보수비는 42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감정료는 무려 300만원이나 들었다

1) 수소법원과 조정기일 : 광주지방법원 2007년 4월 13일

2) 조정준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피해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으나 단지 배상금액과 그 보수방법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다. 먼저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판사실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논의한 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정안은, 감정가격이 이미 나왔으므로 그 금액(42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자료만 일부(10%)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담당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조정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이미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성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3) 조정진행

조정실에는 재판부는 빠지고 조정위원만 둘이 들어갔다. 조정실에는 원고와 그의 남편이 참석하고, 피고측에는 설비회사사장과 직접 공사를 작업했던 사람이 참석하였다. 우선 양당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바로 협상절차로 들어갔다. 기록상 청구원인사실과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기 때문에 피고를 대기실로 내보내고 먼저 원고와 협상을 개시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2,100여만원인데 견적서를 보니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산입되어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위자료 일부를 보태어 5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남편(공무원)의 직장생활에 불편이 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난색을 보였지만 함께 참석한 그의 남편은 이쯤해서 사건을 끝내기를 바란 것 같았다.

이젠 원고를 내보내고 피고를 불러 5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판결을 하면 피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즉, 판결을 할 때는 감정가격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될 것이고 거기에 대체숙박비와 위자료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서야 피고는 500만원을 수락하였다. 결국 양당사자는 5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된 듯 싶었다.

그러나 300만원의 감정료부담을 누락하였다. 대개 조정이 성립할 때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되면, 원고가 수락한 조정금액은 500만원인데 여기에 감정료 300만원을 빼면 결국 원고는 2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처음에 원고와 피고가 500만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서로 상대방이 감정료(300만원)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감정료부분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자 그동안 애써 합의한 500만원의 조정은 수포로 돌아갈 뻔 했다. 다시 원점에서 조정을 해야 했고 결국 당사자를 설득하여 감정료를 서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만을 주고 그 밖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면 최소한 150만원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감정을 실시해서 조정성공은 더 쉬워졌지만, 감정료 때문에 조정의 효용가치는 그만큼 감소했다고 본다.

(3) 임대차계약 해제사건(2006가단 17350사건)

<사안>

원고는 학원강사이고 피고는 건물주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10월 광주 유촌동 소재 4층건물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은 2005년~2008년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6,000만원, 월 임대료는 2006년 11월까지는 150만원, 2006년 12

월부터는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약금 6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학원설립에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교육청에서는 학원건물에는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1개뿐이고 소방시설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설립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설명하고 직통계단의 추가설치와 소방시설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는 이 건물을 학원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당해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원고의 학원설립신청이 거부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가 못된다.』고 반박하였다. 또 원고가 지불한 계약금은 前 임차인(前 학원운영자)으로부터 학원설비에 대한 인수비용이므로 건물주인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 수소법원과 조정기일 : 광주지방법원 2006년 12월 22일

2) 조정진행

우선 조정하기전에 재판부와 조정위원들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조정안은 8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로 잠정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던 금액은 1,600만원이고 그 절반이 800만원이기 때문이다.

조정실에는 조정위원 둘만이 들어갔다. 먼저 양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들었다. 원고는 이제 갓 결혼한 여성으로서 보증금을 얼른 빼서 다른 곳에 학원을 새로 시작해 보려는 중이었고, 피고는 중년의 재력가로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다소 느긋해 보였다.

피고는 중도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은 원고에게 내줄 의사를 보였다. 그래서 원고를 대기실로 내보내고 먼저 피고와 협상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불한 600만원은 부품대라고 처음에 주장하였으나 여러번 설득한 끝에 결국 그 절반인 300만원을 추가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1,300만원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젠 원고를 불러 1,30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경솔함을 나무랐다. 즉, 『임대차계약을 할 때 시설이나 학원설립기준도 살펴보지 않고 어찌 광고만 보고 선불리 계약하셨어요?』라고 말하자, 원고의 입장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라 1,300만원의 조정안

을 받아 들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4) 임치계약 해제사건(2007가단 2263사건)

<사안>

원고는 양파생산자이고 피고는 냉장창고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 9월부터 5개월간 원고의 양파를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고, 매월 보관료 180만원과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바로 피고의 창고에 양파가공기계(1,000만원 상당)를 창고에 입고시키고 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양파가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자 창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1개월이 지난 후에야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양파가공기계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창고사용료 전부(5개월분)를 요구하면서 장비반환을 거절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이미 계약기간(5개월)은 전부 만료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양파가공기계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관료 전부(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장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왜냐면 계약서에 「계약기간(5개월)동안 乙(원고)이 창고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乙(원고)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고가 창고를 5개월간 사용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창고를 내 줄 기회를 상실하였고, 또 원고의 장비가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창고는 원고가 사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1) 수소법원과 조정기일 : 광주지방법원 2007년 3월 30일

2) 조정의 진행

조정실에는 재판부는 들어오지 않고 조정위원 둘만 들어갔다. 이 사건은 사실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에서 전혀 쟁점이 없고 오직 당사자의 감정싸움이었다. 먼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 준 후, 각자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자 각자에게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원고는 위약금으로 300만원은 줄 수 있다고 하고, 피고는 600만원을 요구하였다.

우선 피고를 밖으로 내보내고 원고와 협상을 벌였다. 처음에 원고의 태도는 완강했다. 즉,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돈이 전혀 없어 300만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면서, 그거라도 받고 기계를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푼도 안주고 기계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이 경찰대학을 졸업하여 현재는 경찰간부로 재직중이라면서 자랑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은 원고가 계약서상 불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또 원고가 신

용불량자가 되면 딸(경찰간부)의 출세에도 지장이 될 것이라고 타이르자, 조정에 임하는 원고의 태도가 금방 달라졌다. 그래서 총보관료의 절반인 45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어 원고를 내보내고 피고를 불러들여, 『원고가 지금 신용불량자이므로 피고가 승소한들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격정해 주자, 조정에 임할 뜻을 내비쳤다. 그래서 총보관료의 절반인 45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를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IV. 민사조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서언

위의 민사조정 운영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사조정제도는 그 이용건수가 2001년에 69,10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후 해마다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전체 민사본안사건에 비해 조정·화해처리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판부마다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 조정이 그 만큼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재판부는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제도의 활용은 어느 법원보다도 높다. 이하에서 필자의 경험을 기초로 현행 조정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2.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

민사사건중에는 조정에 부적당한 사건이 있다. 예컨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청구의 소, 강제집행이의의 소 등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해당 기관의 공익적 성격상 조정보다는 사법부의 판단(판결)에 의해 권리의무를 확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조정에 의할 경우 임의배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렇지 않다. 예컨대, 상급심에서 지연의자나 소송비용 등을 면제받고 원심판결의 배상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이나 화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신분관계소송도 성질상 중간합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정의 시도와 노력은 무위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는 무조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위원은 조정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

간을 할애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건이 조정애 적합한 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조정애 부여야 한다.

3. 강제조정애 남발

조정애 같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일부 재판부에서 함부로 행해진다. 조정은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임의성’이 강조된다.⁴⁴⁾ 따라서 강제조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⁴⁵⁾ 예컨대, 어느 한쪽 당사자는 수락하지만 다른 쪽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수락하지도 않는 경우, 또는 즉시 수락을 못하고 제3자의 동의⁴⁶⁾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그런데 한쪽 당사자만 조정애 수락하고 다른 쪽은 강하게 반발하는데도 강제조정을 실시한다든지, 아예 양당사자가 서로 조정애 대한 시각차가 큰 데도 강제조정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기 마련이고, 설령 마지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판결문을 쓰기 싫으니 조정을 하구나』 하면서 법관을 비난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초래한다.

4. 법관(조정장)의 배석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실시할 경우 재판부의 판사(수명법관)가 조정장이 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조정장(판사)의 의견에 소극적으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조정위원의 경륜과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법관이 배석할 경우 그가 조정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조정절차는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조정위원은 조정절차를 계속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결국 조정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따라서 법관은 조정실에 일단 들어와서 조정위원을 당사자에게 소개만 해주고, 조정의 진행은 조정위원들에게 맡기는 게 진정한 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다.⁴⁷⁾ 이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법관이 들어와 당사자에게 조정애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실제 당사자가 판사에게 할 수 없었던 말을 조정위원에게는 털어놓는 경우가 있었다. 필자가 속한 재판부(광주지법 12단독)의 법관은 항상 조정실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재판부의 조정성공률은 당해 법원에서 가장 높다.

44) 구재균, 민사조정애 관한 연구—민사조정법의 해석상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8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 p. 123

45) 김상영, 민사조정·화해제도의 활성화방안과 ODR, 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p.394

46) 예컨대, 회사를 대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승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등

47) 호문혁, 재판애 같음하는 분쟁해결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제46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10, p.12

5. 당사자에 불리한 판결의 경고

가끔 조정장(법관)이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판사는 강제조정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는 조정제도의 원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사실 강제조정 그 자체도 조정제도에 맞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나마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다.

6. 조정시간의 부족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실시할 경우⁴⁸⁾, 한사건당 한시간씩 배정된다. 그리고 한번에 보통 2건을 처리한다. 한사건당 한시간만 주어지므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기 어렵다. 항상 시간에 쫓기어 다음 사건에까지 지장을 준다. 여유로운 자세로 조정에 임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조급해져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면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7. 조정위원의 조정기술 부족

민사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하는데, 학식과 덕망만으로 조정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 조정절차와 조정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정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형식적인 전문가 위촉

민사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조정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사회적인 지위 등 형식적 요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의사협회회장, 건축사협회장, 변호사협회장, 법무사회장, 시민단체의 대표나 회사의 대표이사 등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대표자는 소속단체나 회사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조정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단체의 장을 직접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단체의 장에게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8) 이는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조정위원의 연소

조정위원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한다. 조정위원이 너무 젊을 경우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문가조정위원을 위촉하면서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발해 30대 조정위원들도 몇몇 있다⁴⁹⁾. 얼마전 20대 후반의 젊은 사법연수원생과 함께 조정을 진행했는데 그 때 당사자들의 나이는 70대이었다. 필자가 조정안에 대해 말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사법연수원생(조정위원)이 말을 건네자 원고가 갑자기 흥분하여 조정위원에게 대들어 당황한 적이 있다. 조정에는 전문가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사회적 통념에 의한 설득력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V. 민사조정의 조정성공률의 제고방안

이하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경우 그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사전 기록검토

조정위원은 사전에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조정에 임해야 한다. 보통 조정시간이 사건당 한시간이므로 당사자의 말을 일일이 다 들을 시간이 없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서 미리 조정위원들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말은 기록에 쏘여져 있지 않은 당사자사이의 감정대립이나 가정환경 등 인간적인 측면에서 들어 주어 조정의 여지를 파악한다.

2. 사전 자료준비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이러한 자료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할 때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특히 전문가 조정위원의 경우 이러한 자료는 조정안을 설득할 때 효과가 크다. 예컨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최저임금표,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률 등.

49) 앞의 <표14>에 의하면 교수 3명이 30대이다. 요즈음 교수 신규채용시 인문계의 경우 4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30대 연령의 교수는 신참교수에 해당된다.

3. 재판부와 조정안의 조율

조정에 임하기 전에 조정위원들은 조정안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은 사전에 재판부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이나 쟁점을 듣고 자신의 조정안을 재판부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의 조정안이 사건의 성질상 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⁰⁾ 조정위원이 미리 조정안을 갖고 있어야 각 당사자와 협상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양당사자의 면전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로부터 거부감을 살 수 있다. 조정안은 당사자와 금액을 조율할 때 기회를 봐서 제시한다. 그렇다고 미리 생각한 조정안(금액)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봐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4. 비법률적 조건들의 활용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 승소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강제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경험상의 실수 또는 도의적 책임 등을 지적해 주고, 패소우려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가정이나 직업상의 문제점 등을 부각시켜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정이 판결보다 더 유익하다는 점을 깨우쳐 준다.

5. 양당사자면전에서 有·不利한 말 止揚

조정위원은 양당사자의 면전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당사자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원한다. 조정을 원한다 해도 자기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 또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밖에 내보내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쪽당사자만을 불러놓고 그에게 주로 불리한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유리한 사실은 당사자 혼자만 있더라도 말해주지 않는 게 좋다.

50) 민경환변호사(광주변협소속)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가급적 피하고 수소법원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면 자신이 맡은 사건(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위원이 법률지식부재로 엉터리조정을 하였다 는 것이다.(민경환, 전제논문) 이런 경우 조정위원이 미리 조정장(법관)과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면 그러한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조정위원의 사명감과 인내

조정위원은 조정에 대한 사명감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조정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해 줘야겠다는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위원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할 때까지 끈기 있게 참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VI. 결 론

위에서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조정성공률의 제고 방안을 살펴 보았다. 조정처리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정성공률도 수소법원의 직접 조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높은 편은 아니다(50%수준). 이러한 조정성공률의 제고는 조정제도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정성공률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다.

오늘날 법원의 역할은 당사자의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에 있다. 이는 법적 판단인 판결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쟁 당사자에게 합당한 해결수단이면 족하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야말로 법원이 취할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방법일 것이다. 이젠 『무엇이 법인가?』를 분쟁 당사자에게 말해 주는 곳은 대법원에 맡길 일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과거에도 오늘에도 지당한 명제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의 존재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건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기 마련이다. 판사의 기억만으로는 그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⁵¹⁾

한편 소송당사자들의 가슴속에는 배신감이나 울분에 가득찬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인내와 끈기로 들어 주고 설득하여 단힌 마음을 열게 하여 대화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어 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조정과 화해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양당사자의 양보하는 자세, 변호사의 협조, 재판부나 조정위원의 의지, 조정위원의 사전준비와 설득력 있는 방안제시 등 여러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비로소 조정이 성립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정위원들의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인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조

51) 류재복(대전지법 금산군법원판사), 조정을 권하면서, 법률신문 2003년 7월 5일자

정위원은 서두르지 않고 항상 여유 있는 자세로 공평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때,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그 결과 조정성공률은 높아지고 조정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5.
- 정동운·유병현 공저,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 법원행정처, 「민사조정위원 직무편람」, 법원행정처, 2006(단행본)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2년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2년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3년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년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년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6년판.
- 사법연수원, 「ADR : 判決 이외의 紛爭解決」, 사법연수원, 2003.
- 강민구,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형평과 정의」 16집, 2001. 12.
- 강민구, “고등법원 민사항소사건의 조정활성화방안”, 대전고등법원 인트라넷, 2007.
- 구재균, “민사조정 에 관한 연구-민사조정법의 해석상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제28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
- 권혁재, “ADR,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개괄 :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중심으로”, 「법무사저널」 통권142호, 서울지방법무사회, 2004. 02.
- 김상수,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Jurist」 393, 청림인터랙티브, 2003, 06.
- 김상영, “민사조정·화해제도의 활성화방안과 ODR”, 「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 류재복, “조정을 권하면서”, 법률신문 2003년 7월 5일자.
- 민경환, “민사조정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법률신문 2005년 12월 19일자.
- 유병춘, “민사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II, 광주지방법원, 1997. 12.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2002. 08.

- 전병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방향”, 「변호사」32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01.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1호, 한국중재학회 2007. 3.
호문혁,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제46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10.

〈외국문헌〉

- 下町和雄, 民事調停の問題點, 「新裁判實務大系」26卷, 青林書院, 2005, p. 482.
山田文, 現代型ADRの再生としての民事調停, 「判例時報」1811號, 2003. 04.
伊藤文秀 外4, ADR機關の活動と課題: ADRの發展に向けて, 「登記情報」44卷1號(506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04, 01.
Kimberlee K. Kovach, 「Mediation」, Thomson/ West 2005.
Richard L. Marcus & Wdward F. Sherman, 「Complex Litigation」, 2nd ed., West
Publishing Co. 2000.
Gordon, Elizabeth Ellen., What role does gender play in mediation of domestic relations cases?,
Judicature Vo. 86, no.3, AJS, 2002. 11.
Gordon, Elizabeth Ellen, Why attorneys support mandatory mediation, 「Judicature」Vo. 82, no.5,
AJS 1999. 03.
McTernan, Sean, Mediation Point : What is the Future for ADR in the Media?

ABSTRACT

The Legal Sociological Study on the Reality of Civil Mediation and it's Activating Policy - in Jurisdiction of Gwangju & Chonnam District Court -

Dae-Sung Oh

Mediation is type of intervention in which the disputing parties accept the offer of the judge or a third party to recommend a solution for their controversy. Mediation differs from arbitration in being a voluntary resolution rather than a judicial procedure. Thu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e not bound to accept the mediator's recommendation. Resort to medi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requent for civil disputes. Mediation has been successful in many cases of civil conflict. Medi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monetary disputes as well, particularly in damage cases.

While most people consider mediation a far superior experience to court, everything I tell you a mediator should not do is something that at least one mediator I have dealt with has done to a client.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ever share anything you tell him or her without your permission.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ot "spring" evaluations on anyone in a mediation without your permission (e.g. a mediator should never say "your case is worth ₩ OOOO and I just told the other side that).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ot browbeat or threaten you.

At the end, usually about 55% of the time with a good mediator in Kwangju Appellate Court in 2003,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that is in their best interests. If they decide to sign off on a signed agreement, the signed agreement is binding. I obviously feel mediation is a very good thing and the numbers and surveys bear me out.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how mediation is proceeded, what is the realities,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the activating way

For this study, I research with legal sociological approach using Korean Judicial Year Book, judicial document and my experience as mediator in Kwangju District Court.

Key Words : Civil Mediation, Reality of Civil Mediation, Activating Policy of Civil Mediation, Rate of Civil Mediation, Success Rate of Civil Mediation, Legal Sociological Study, Judicial Settlement